

법률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법원도서관의 부산고등법원도서실을 다녀와서

법원도서관은 재판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서, 기타 도서관 자료 및 사법자료를 수집·정리·보존·편찬·발간하며, 도서관자료 및 사법자료에 관한 정보제공과 도서관 봉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도서관으로, 서울에 있는 법원도서관을 중심으로 각 지방법원, 사법연수원도서실 등 전국적으로 24개의 도서실에 총 22만권의 도서(이 중 19만권이 법률도서)를 소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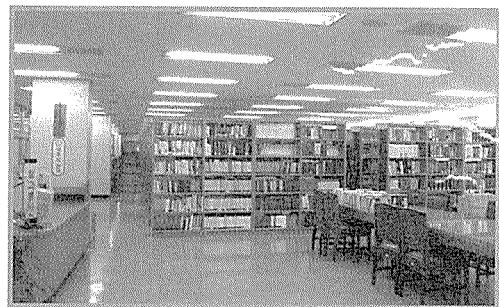
■ 편집자 주

우리 《도서관문화》에는 아직 독자엽서가 끼어 있지 않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아직까지는 편집자와 독자간의 의견교환이 기대만큼 활발하지는 않다. “도서관문화” 월간전환을 계기로 새로 만들어진 〈도서관탐방〉 지면도 한 번 두 번 연재를 하다보니 은근히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과연 독자들은 재미있게 보고 있을까 아니면 괜히 아까운 지면만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저런 추측만 할 뿐 도대체 그 관심도를 알 길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도서관도 한번 방문해 주시렵니까?”라는 전화가 편집실로 걸려왔으니, 그곳이 바로 이번 4월호에 찾아가 본 부산고등법원도서실이다. 독자의 반응에 목말라했던 우리 도서관탐방팀으로서는 제주도 아니 그보다 더 먼 해외에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한걸음에 찾아갔을 것이다. 지난 2월 말 경 통화할 때만 해도 4월은 멀게만 느껴졌는데 이번에 부산에 가서 보니 따스한 햇살에 거리거리 만개한 봄꽃들이 정말 잔인하게 아름다웠다.

부산고등법원 4층에 위치한 도서실은 190여평의 규모에 사서직원 2명과 공익요원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총 장서는 3만4천여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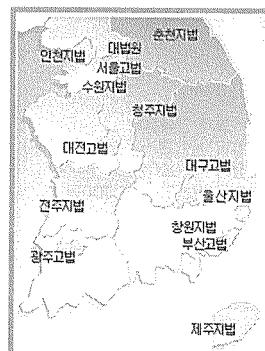
부산고등법원도서실의 역할은 크게 다음과 같다. 첫째, 대출 및 열람. 도서관의 성격상 대부분의 자료는 각 종 법령, 판례 등이며 특징으로는 일본도서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우리의 육법이 구 일본육법에 뿌리를 두고 있어 일본자료를 많이 이용할 수밖에



〈도서실 입구 정면에서 찍은 사진. 3년 전 지어진 신축 건물이라 넓고 깔끔했다.〉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물론 부산고등법원도서실에 없는 자료는 전국 법원도서관 네트워크망을 통해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각급 법원 도서담당자를 경유하여 신청할 수 있다.

두 번째 역할은 전국 유관기관, 법학중앙도서관, 법학연구소와의 자료교환. 부산판례연구회가 매년 발간하는 판례평석집을 전국 관계기관에 배포하고 있으며, 지역특성상 해양분야 자료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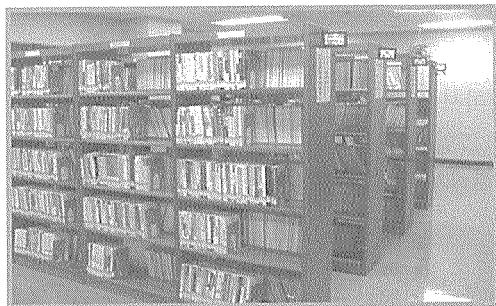


〈이 지도는 법원도서관 홈페이지에 있으며, 지도를 클릭하면 해당 법원의 주소, 전화번호 및 각 법원별 장서통계 현황을 보여준다.〉

부산고등법원도서실이 많이 소장하고 있다고 한다. 세 번째는 한 달에 두 번씩 비디오 또는 DVD로 영화를 상영하는 것으로, 직원들의 정서 함양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라고 한다.(법원 1층 엘리베이터 바로 옆 게시판에 도서실 영화 상영 안내문이 크게 붙어 있는 것을 보니 괜히 기분이 좋아진다. 이런 역할을 하는 도서실마저 없다면 발소리도 조심조심 말소리도 조용조용, 과도하게 엄숙해서 어찌 보면 살벌하기까지 한 이 공간이 얼마나 썰렁할까하는 생각도 든다.)

마지막 네 번째 활동은 도서관 안에 있는 동백문고를 운영하는 것이다. 1998년 문을 연 동백문고는 일반문고, 어린이문고, 비디오(400점), DVD(121점) 등 단행본 5,334권을 소장하고 있는데 직원 및 자녀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하루에대출건수가 70건 정도가 되는 인기만점 코너라고 한다. 부산고등법원 총 직원 수는 용역 직원 포함 약 800명이며, 동백문고의 자료는 웹서브로 가정에서도 검색할 수 있다.

이 많은 일들은 사서 2명이 어떻게 할 수 있을



(부산고등법원도서실 내의 동백문고 총 5334권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고 하루 대출건수가 70건)



(‘참고봉사’라고 크게 쓰여진 안내문은 법률사서의 주요 역할이 주제전문 참고봉사활동에 있음을 말해주는 듯하다. 부산고등법원도서실에서만 15년 근무하고 있는 하증숙 사서)

까. 1일 이용자 20여명이고 1인당 참고봉사 평균 소요 시간이 30분이라고 하는데 언제 책 사고 분류 목록하는지 궁금했다. 답은 간단했다. 전국 24개 도서관에서 필요한 도서를 서울 법원도서관에서 일괄 구입해서 내려보내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법부가 구축한 종합법률정보 시스템을 비롯해서 자료 검색 네트워크 망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도서관 자료 이용에 대한 이용자의 불만이 거의 없다고 한다. 다만 지역 사서들이 일부 수서 권한을 가지고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자료 선정을 할 수 있다면 자료 입수 시각도 빨라지고, 현재의 전국 네트워크망을 통하여 양적 질적 팽창도 가능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부산고등법원을 포함 대부분 법원도서관의 경우 일반인들의 열람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도서관 설립 목적 상 불가피한 조치이나 법학관련자들 및 사건당사들과 같이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어 도서관장의 승인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편의에 따라 열람을 허용시키고 있으며, 종합법률정보 시스템에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법조인, 법학자 및 일반 국민에게도 실질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원도서관은 1997년부터 ‘법고을 LX’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고 한다.

“법”은 인류의 등장과 더불어 어떤 형식을 취하든지 간에 공존해 왔고 법과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일반인들도 그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존재하는 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다. 게다가 법률가에게는 법률문헌이 전문적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도구이고,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충실향한 법률도서관 없이는 전문적 활동의 수행이 불가능하다. 그만큼 중요한 전국의 법원도서실을 책임지고 있는 사서들의 (대법원도서관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법원도서실의 경우 1인 운영체제이다.) 다양한 고민과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어, 법원도서관이 법조와 학계 전문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과 일반 국민들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된 공간’으로 사랑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글 : 박경아 기획 · 흥보팀장, 사진 : 심효정]